

가정복지국 소관

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1994. 5

교 육 사 회 위 원 회
건 문 위 원

목 차

1.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

가. 예산안 총괄	496
○ '94 세입 예산안	496
○ '94 세출 예산안	497
○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	498
나. 예산안 개요	499
다. 검토 의견	500

가. 예산안 총괄

○ '94년도 세입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정예산액		증 △ 감	
		%		%		%
합 계	639,000,032	100	504,769,602	100	134,230,430	26.6
지 방 세	101,496,000	15.9	101,496,000	20.1	-	-
세 외 수 입	264,956,373	41.5	136,954,373	27.1	128,002,000	93.5
경 상 적 세외수입	6,021,379	0.9	6,021,379	1.2	-	-
임 시 적 세외수입	258,934,994	30.6	130,932,994	25.9	128,002,000	97.8
지방교부세	102,735,000	16.1	98,687,000	19.6	4,048,000	4.1
지방양여금	49,748,234	7.8	49,588,667	9.8	159,567	0.3
보 조 금	89,064,425	13.9	87,043,562	17.2	2,020,863	2.3
지 방 체	31,000,000	4.8	31,000,000	6.2	-	-

○ 199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6,390억 3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,047억 6,960만 2천원에 비하여 26.6%에 해당하는 1,342억 3,043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94년도 세출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정예산액		증 △ 감	
		%		%		%
합 계	639,000,032	100	504,769,602	100	134,230,430	26.6
인 건 비	39,440,913	6.2	38,311,239	7.6	1,129,674	2.9
물 건 비	27,701,059	4.3	26,539,824	5.3	1,161,235	4.4
이 전 경 비	118,076,563	18.5	108,332,198	21.5	9,744,365	9.0
자 본 지 출	367,232,238	57.5	217,702,962	43.1	149,529,276	68.7
용 자 및 출 자	48,903,173	7.6	44,078,173	8.7	4,825,000	10.9
보 전 재 원	12,781,397	2.0	12,506,895	2.5	274,502	2.2
내 부 거 래	8,962,369	1.4	6,093,012	1.2	2,869,357	47.1
예 비 비 및 기 타	15,902,320	2.5	51,205,299	10.1	△ 35,302,979	△ 68.9

○ 199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,390억 3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,047억 6,960만 2천원에 비하여 26.6%에 해당하는 1,342억 3,043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○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당초예산액		1회 추경 증 감 액	
		%		%		%
합 계	21,048,926	100	19,525,347	100	1,523,579	7.8
인 건 비	250,508	1.2	247,868	1.3	2,640	1.1
물 건 비	403,081	1.9	393,650	2.0	9,431	2.4
이 전 경 비	14,111,168	67.0	13,465,976	70.0	645,192	4.8
자 본 지 출	6,279,169	29.8	5,414,853	27.7	864,316	16.0
용자 및 출자	-		-		-	
보 전 재 원	-		-		-	
내 부 거 래	5,000	0.1	3,000	0.1	2,000	66.7
예비비및기타	-		-		-	

○ 가정복지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0억 4,89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95억 2,534만 7천원에 비하여 7.8%에 해당하는 15억 2,357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예산안 개요

첫째, 인건비는 2억 5,050만 8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.1% 증가한 264만원은 본청 및 여성회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단기 인상분으로 계상 되었음.

둘째, 물건비는 일반수용비등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제소요경비로 10개 항목에 대하여 4억 308만 1천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에 비해 2.4% 증가된 94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셋째, 이전경비는 보상금, 민간 및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141억 1,116만 8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4.8% 증가된 6억 4,5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.

넷째,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, 민간 및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 등 3개항목에 대하여 62억 7,916만 9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6.0% 증가된 8억 6,431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.

다섯째, 내부거래는 기금 적립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66.7% 증가된 200만원이 증액되었음.

다. 검토의견

19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10억 4,892만 6천원 규모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4,228억 5,115만 7천원의 5.0%를 차지하고 있으며,

이는 국소관 당초예산 195억 2,534만 7천원에 비해 7.8%에 해당하는 15억 2,357만 9천원이 증액된 것임.

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전액계상, 세출 필수 소요액 및 투자사업비 확보, 경상경비 절감 운영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'94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 계상하였는 바,

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계상 또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못한 것인지,

아니면 당초 예산 심사시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다고 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산절감 명목하에 일괄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차질이 오지않을까 우려되며 한편 예산부기 내용이 난해한 점이 있어 예산심사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향후에는 적절한 부기가 필요할 것임.

○ 세출예산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는

- 노인헌장탑 건립의 의미와 효과 (p256)
- 화장장 및 납골장려비 695만 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인데다 묘지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전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되므로 화장장 및 납골장 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 바, 향후 대책은? (p258)
- "고장을 빚낸 사람들" 책자 발간에 따른 위원회 및 편집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 (p259)
- 자원봉사 토론회 참석자 식비보상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 (p259)

-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금 (150만원)은
저소득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것으로, 당초 시군 58명 증평출장소 2명으로
설명된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재조정 계상한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
것은 아닌지? (p260)
- 청소년 수련활동 교육안내 책자 발간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책자
내용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 (p261)
- 당초 예산설명시 불우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적립금으로 설명했던 것을
불우청소년자립 정착금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
그 세부내역 (p262)
- 자산취득비중 차량 대체취득, 복사기 대체취득등 6건 460만원이 삭감 계상되
었는데,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책정 여부 (p266)
-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전교생 청소년 단체가입 중심학교 지원비가 추경예산에
반영되지 않은 사유